

☎044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7층 [http://www.kma.org]/전화(02)6350-6562 / 전송(02)792-5208
총무학술국 국장 최길만 [6510] 학술교육팀장 김성진 [6552] 담당 이정화 [6562] /jhpure@kma.org

문서번호 대의협 제441-5231호

시행일자 2019. 8. 6.

수 신 연수교육기관장

참 조

제 목 연수교육 필수평점 등 관련 지침 준수 요청 안내

1. 귀 교육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가 시행 중이며,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의 필수과목을 면허신고 시마다 2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제39-11차 연수교육시행평가단 운영위원회(2018. 3. 14.)의 결정에 의거하여, 필수평점 교육기관의 경우 일일 최대 2평점, 연 최대 4평점을 기준으로 필수교육을 시행하도록 연수교육기관용 연수교육 지침을 안내(2018. 4. 3.)한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최근 필수교육기관에서 필수평점 연 최대 4점 기준을 초과하여 시행하는 사례와 필수평점 교육기관이 일반평점 연수교육기관 또는 비연수교육기관과의 공동주최를 통해 필수평점을 부여하는 위반 사례가 발생하여 연수교육 시행에 따른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필수교육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가. 필수교육기관 필수평점 관련 유의사항

- 1) 필수평점 일일 최대 2점, 연 최대 4점 운영(자기관은 필수교육 진행 불가)
 - 2) 필수평점 인정 기준 : 실제 60분 참여해야 1평점 인정 가능
 - 3) 필수과목 주제 : 의료윤리, 의료법, 의료감염관리, 의약품 부작용 사례, 의료분쟁 사례 등
 - 4) 공동주최 관련 : 필수평점 연수교육기관이 일반평점 연수교육기관 또는 비연수교육기관과의 공동주최를 통해 필수평점 부여 불가
- ※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라 성희롱, 성폭력, 폭력 및 인권교육, 감염관리, 장애인건강권, 마취사고 등 응급상황 대비교육, 자살예방교육, 아동학대예방, 노인학대예방 주제도 필수교육으로 진행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

